

## 교원학술연구 규정

<제정 1994.10.01.>, <20차 개정 2022.02.18.>

### 제 1 장 교원학술연구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이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말한다)의 학술연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3.>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되, 연구실적물의 범위, 인정 및 심사는 「교원인사 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교수업적평가, 연구년(해외연수) 등 관련업무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2.11.13., 2018.03.01>

**제 3 조 (연구활동 의무)** 교원은 매 학년도마다 100%이상의 연구실적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실적물의 범위)** ① 연구실적은 최근 임용시에 인정받은 전공분야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적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02.19., 2016.01.29>

1. 저서(출판한 것에 한함)
2.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개정 2010.02.19., 2016.01.29>
3. 국제저명학술지(SSCI, A&HCI, SCI(E), SCOPUS) <개정 2016.01.29.>
4. 국제일반학술지 <개정 2016.01.29.>
5. 예·체능계 및 창작실기계는 연주, 발표, 전시, 공연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6.01.29.>
6. 외부연구비 수주 입금액 및 기술이전료 <신설 2010.02.19, 개정 2021.12.20., 2022.02.18>
7. 삭제 <신설 2016.01.29, 개정 2018.03.01., 2018.10.05>

**제 5 조 (연구실적물의 인정)** ① 연구실적물의 1인당 인정환산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02.19., 2016.01.29>

② 저서는 저자와 발간자가 있는 국내(외) 출판된 전공분야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에게 공개된 출판저작물로 반드시 ISBN을 부여받은 법인, 단체, 개인이 발행한 상업 창작집, 공연·전시에 의해 발표된 희곡(시나리오, 각색 포함)집, 평론집, 사진집 등의 문예창작물과 학술서적을 의미하며 초판만 인정한다. <신설 2016.01.29.>

③ 국제저명 학술지의 인정비율을 SCI(E)(Impact Factor(이하''IF''라 한다)=1.0이상), SSCI와 A&HCI는 IF에 관계없이 해당 실적의 2배로 인정한다. <개정 2010.02.19., 2016.01.29>

#### 4-1-1 교원학술연구 규정

④ 예·체능계 및 창작실기계에 대한 인정 기준은 「교수업적평가 규정」 "별첨[2-1]", "별첨[2-2]", "별첨[2-3]" 에 의하되 평점 2점을 연구실적 1%로 인정하며, 관계 증빙자료와 공인을 필요로 하는 항목은 공인기관 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02.19, 2012.11.13, 2016.01.29., 2018.03.01>

⑤ 외부연구비 수주 입금액의 연구실적 인정기준은 자연과학, 전산정보과학, 공학계열은 50만원당 1%로 하고, 그 외 계열은 50만원당 2%로 하며, 기술이전료는 자연과학, 전산정보과학, 공학계열은 20만원당 1%, 그 외 계열은 10만원당 1%로 한다. <신설 2012.11.13, 개정 2021.12.20., 2022.02.18>

⑥ 삭제 <신설 2016.01.29, 개정 2018.03.01., 2018.10.05>

⑦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및 재임용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은 「교원인사 규정」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을 우선한다. <신설 2018.03.01, 개정 2019.03.01.>

⑧ 제4항 및 제5항의 환산방법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신설2019.03.01.>

**제 6 조 (연구실적물의 심사)** 연구실적물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전공분야의 타교 3인 이상 교원이 심사하되, 심사대상자 직위 이상인 자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2.19, 2012.11.13., 2016.01.29>

**제 7 조 (심의기구)** 교원의 학술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학술연구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2 장 기 타

[종전 제7장에서 이동2019.03.01.]

**제 8 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9.02.28.]

##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기존의 교원학술연구규정, 교원연구실적물 제출 및 관리규정, 연구비 지급규정, 연구논문집 간행규정, 교원학회활동 및 세미나 참가에 관한 규정, 교원학술연구실적 심의위원회 규정은 폐지된다.

③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단체가입이 되어있는 학회는 본 규정에 의한 단체 가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4-1-1 교원학술연구 규정

이 규정은 200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0.02.19.]

####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2.11.13.]

####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6.01.29.]

####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8.03.01.]

####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위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31일 이전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승진임용 및 재임용의 연구실적으로 대학특별봉사점수 2점을 연구실적 1%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된 이후에는 대학특별봉사를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본부칙신설 2018.10.05.]

####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교원학술연구 규정 중 연구비 지급, 연구논문집 간행, 학회 및 학술활동, 협동연

구,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은 연구비 관리 규정으로 이관한다.  
[본부칙신설 2018.11.09.]

###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9.02.28.]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1.12.20.]

###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2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위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에 관한 2022년 2월 28일 이전 임용된 교원의 외부연구비 수주액은 자연과학, 전산정보과학, 공학계열은 100만원당 1%로 하고, 그 외 계열은 100만원당 3%로 한다. 다만, 2022년 3월 1일 이후 승진임용자 또는 재임용자는 본 규정 제5조 제5항에 따른다.  
[본부칙신설 2022.02.18]

[별표]

### 연구실적물의 1인당 인정환산율

인정환산율	구분	연구자수	주저자	공동저자	
	논문	1인		100%	-
		2인		80%	<b>70%</b>
		3인		70%	<b>3인이상:</b>
		4인 이상		60%	<b><math>\frac{1}{(n+1)} \times 100\%</math></b> <b>※ n: 전체저자수</b>
	저서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 주저자(책임저자,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논문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경우와 해당교원이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공동저자의 인정환산율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